[행복**U**p희망**U**p 희망포럼] [자료집]

중앙정부 사회보장정비 방안에 대한 충북지역 복지계 대응 토론회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복지사업 하지 말라 합니다요"

2015. 10. $22(\frac{4}{3})$ 13:30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시랑홀 (3F)

중앙정부 사회보장정비 방안에 대한 충북지역 복지계 대응 토론회 일정

| 시간 | 식순 | 내 용 |
|---------------|------|---|
| | | ■ 사회: 김헌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13:30 ~ 13:40 | 개회식 | 내빈소개 및 인사말 |
| 13:40 ~ 14:20 | 주제발표 | 발제: "복지가 사라진다"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대학원장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학회장 |
| 14:20 ~ 15:20 | 종합토론 | 지정토론 ■ 박현순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손영환 청주상당노인복지관 부장 ■ 조연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 15:20 ~ 15:40 | 질의응답 | 객석 질문 및 응답 |
| 15:40 ~ | 폐회식 | 폐회 |

Program

• 사회 : 김헌진 교수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복지가 사라진다"
 -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대학원장,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학회장)
- ●토론 1 박현순 센터장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토론 2 손영화 부장 (청주상당노인복지관)
- 토론 3 조연희 사무국장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함께 준비한 사회복지 및 시민단체 >

• 주최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행동하는복지연합

• 주관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 충북아동청소년포럼 | 충북사회복지사협회 | 충북종합사회복지관협회 | 충북지역자활센터협회 | 충북노인복지관협회 | 충북장애인복지관협회 | 충북재기노인복지협회 |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행동하는복지연합

• 후원 : 충청북도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행동하는복지연합 공동대표)

1. 박근혜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추진과정과 배경

- 1) 「정비지침」 추진 과정
- 최근 정부는 이른 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박근혜정부는 제10회 사회보장위원회('15.08.11)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15.08.13)(이하 " [정비지침] ")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동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토록 함.
- 정부가 발표한 정비대상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6.5조원) 가운데 중 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9,997억원(사업 수 비중 25.4%, 예산 비중 15.4%)임.
-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율 추진과 전혀 다름.
- 「정비지침」에 따르면, 시·도별 조치필요 사항이라 하여 17개 시·도로 하여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케 하고 있으며
- 중앙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별 추진단(17개),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사업정 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토록 하고
-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재부·복지부·행자부 차관을 간사로 하는 복지재정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점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음.
- 「정비조치」은 9월 25일까지 시·도별 정비계획안 제출, 10월 초 시·도별 정비계획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1월 27일 정비결과 1차 제출, 12월 지자체 정비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2016년 1월 15일 정비결과 2차 제출 등 대단히 급박하게 진행될 예정임.
- 더욱이 11월 27일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 정비결과 1차 제출 시 지자체는 9월 25일의 정비계획안에 따라 조정된 20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정비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 1월 15일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 정비결과 2차 제출 시에는 정비결과가 반영되고 지방의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정비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¹⁾ 본 글은 남찬섭,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설명자료와 이재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이대로 좋은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긴급토론회(2015. 6. 12)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글임을 밝히는 바임.

- 정부는 지자체의 정비결과를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평가(지역복지사업평가(복), 지자체 합동평가(행))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이후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9. 3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안 제12조 제1항 제9호)을 신설하려 함.
- 안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
- 여기서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그 악명 높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조항임.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이 추가되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심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조정을 말하며 이 심의·조정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급여 및 비용부담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있음.
-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지방자치 단체를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당연히 이번 「정비조치」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제공하려는 것임.

2) 「정비조치」의 배경

- 이러한 「정비조치」가 나온 배경에 대해 정부 스스로는 해당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즉, 정부에 의하면, 지자체 도임 20년간 지방제정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확대되어 2015 년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이 27.8%에 달하고 있지만 투입대비 효과성 등 내실화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 사업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현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몇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첫째, '증세없는 복지확대'의 기조를 천명한 박근혜정부로서는 형용모순과 같은 이 기조에 얽매어 복지확대에 별다른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예산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전이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때 지방정부 스스로의 복지자체사업 예산을 줄여

수용 여지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 둘째, 현 정부는 복지예산의 구조조정과 효율화라는 기조를 일찍부터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완구 전국무총리나 최경환부총리를 통해 올 초부터 이런 언급은 지속되어왔음. 정부의 핵심인사들의 이런 기조가 지방자치에 대한 미숙한 인식과 함께 이번과 같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음.

2. 대상 사업 현황 및 선정 기준의 문제점

1)유사 • 정비사업 현황

-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은 1,496개로 17개 광역시 평균 88개 사업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 244개, 경상남도 162개, 전라남도 128개, 서울시 124개, 경상북도 118개, 충청남도 113개, 강원도 109, 충청북도 96개, 전라북도 91개 등(〈표 2〉).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대상자(이용자)는 전체 6,458,825명. 사업대상자가 1백만명이 넘는 지역은 경기 1,720,026명으로 가장 많고, 50만명 이상 지역은 인천 974,532명, 서울 876,569명, 대구 652,512명, 경북 584,938명임. 그리고 20만명 이상 지역은 경남 297,403명, 강원 270,059명, 10만명 이상 지역은 충남 198,164명, 충북 189,824명, 대전 168,875명, 광주 137,801명, 전북 135,363명, 전남 115,654명이며 10만명 미만인 지역은 부산 70,094명, 울산 38,104명, 제주 20,927명, 세종 7,980명.

<표 1> 지방자치단체별 유사·중복사업 현황

| | | 사약 | 법수 | | | 예산액(| 백만원) | | 사업 |
|--------|-------|----|------------|-------|---------|--------|------------|---------|-----------|
| 지자체명 | 기초 | 광역 | 매칭 (시도) | 계 | 기초 | 광역 | 매칭 (시도) | 계 | 대상자 |
| 강원 | 86 | 3 | 20 | 109 | 11,544 | 133 | 32,934 | 44,611 | 270,059 |
| 경기 | 196 | - | 48 | 244 | 35,095 | _ | 281,759 | 316,854 | 1,720,026 |
| 경남 | 121 | 19 | 22 | 162 | 27,975 | 34,314 | 43,195 | 105,484 | 297403 |
| 경북 | 81 | 1 | 36 | 118 | 13,947 | 439 | 22,953 | 37,339 | 584,938 |
| 광주 | 11 | 2 | 17 | 30 | 337 | 4,008 | 14,049 | 18,394 | 137,801 |
| 대구 | 29 | 8 | 19 | 56 | 3,324 | 1,148 | 18,279 | 22,751 | 652,512 |
| 대전 | 7 | 3 | 16 | 26 | 167 | 241 | 20,057 | 20,465 | 168,875 |
| 부산 | 41 | 1 | 15 | 57 | 7,295 | 10 | 27,653 | 34,958 | 70,094 |
| 서울 | 118 | 1 | 5 | 124 | 22,736 | 9,734 | 22,866 | 55,336 | 876,569 |
| 울산 | 17 | 9 | 19 | 45 | 2,345 | 1,783 | 18,662 | 22,790 | 38,104 |
| 인천 | 25 | 5 | 23 | 53 | 3,071 | 5,043 | 70,177 | 78,291 | 974,532 |
| 전남 | 113 | 5 | 10 | 128 | 15,352 | 444 | 49,768 | 65,564 | 115,654 |
| 전북 | 74 | 8 | 9 | 91 | 11,273 | 19,545 | 14,494 | 45,312 | 135,363 |
| 제주 | 26 | 4 | 5 | 35 | 4,098 | 577 | 5,101 | 9,776 | 20,927 |
| 충남 | 85 | 3 | 25 | 113 | 14,760 | 573 | 38,318 | 53,651 | 198,164 |
| 충북 | 72 | 6 | 18 | 96 | 10,729 | 2,396 | 52,011 | 65,136 | 189,824 |
| 세종 | - | 9 | - | 9 | - | 3,038 | | 3,038 | 7,980 |
| 총계 | 1,102 | 87 | 307 | 1,496 | 184,048 | 83,426 | 732,276 | 999,750 | 6,450,845 |

- 충북 지역은 모두 96개 사업, 총 651억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충북 본청 24개 사업, 괴산군 2개, 단양군 6개, 보은군 8개, 영동군 5개, 옥천군 8개, 음성군 8개, 제천시 7개, 증평군 2개, 진천군 9개, 청주시 12개, 충주시 7개 등이 각각 해당됨(세부 사업명 및 해당 예산액은 별첨 자료 참조).
- 96개 사업에 포함된 충북 도민은 모두 18만 9천명으로 추산됨.
- 한편 사회복지대상자별 유사·중복사업 현황(〈표 2〉)을 보면 저소득자 지원 466개, 노인복지 230개, 장애 인복지 230개, 복지시설지원 160개, 지역주민지원 156개, 다문화/북한이탈주민지원 112개, 아동청소년복 지 96개, 여성복지 46개임.

〈표 2〉 사회복지대상별 유사 ⋅ 중복사업 현황

| 대상별 | 사업수 | 예산 | 사업내역 | | |
|------------------|--------|---------|---|--|--|
| 노인복지 | 230개 | 117,298 |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사업, 집수리, 조손가정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요양서비스 지원 등 | | |
| 장애인복지 | 2307}} | 181,365 | 장애인 수당, 여성장애인 출산, 육아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수화통역,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등 | | |
| 아동청소년복지 | 96개 | 13,840 | 요보호아동 의료비 지원,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소년소녀가정 학원비 지원, 요보호아동청소년 장학금지원 등 | | |
| 저소득 지원 | 466기 | 262,761 |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노숙인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 저소득가정 냉,난방비 지원 등 | | |
|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지원 | 112개 | 28,089 | 결혼이민자 교육,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교육지원,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정자녀 방문교육 등 | | |
| 여성복지 | 4671 | 5,797 | 여성일자리사업, 여성긴급전화 운영,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 | |
| 복지시설지원 | 1607}} | 253,655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복지센터 지원 등 | | |
| 지역주민 지원 | 156개 | 136,945 | 주거환경개선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장난감 대여, 보육료 차액지원, 입양가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의사상자 지원, 이재민 구호 등 | | |
| 계 | 1,496개 | 999,750 | | | |

2) 정비대상사업군 및 정비기준

- 먼저 각 지자체에 통보한 정비지침은 정비대상 사업을 4가지 사업군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군별로 정비유형을 정하고 있음(〈표 3〉참조).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별로 정비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정비 사업을 정하고 있음(〈표 4〉).
-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하고,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경우 제도의 통일성, 지역간 형평성, 동일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 의 급여는 원칙으로 정비,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사업 등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음.

<표 3> 유시중복 정비대상 시업군 및 정비유형

| ~~~~~~~~~~~~~~~~~~~~~~~~~~~~~~~~~~~~~ | 정비 | 사업수 | 예산 (억원) | 유사중복 사업군 | | | | | | | | | | | |
|---------------------------------------|--------------------------|-------|------------|-------------|---|-------|-------|-------|-------|-------|-------|--|--|----------|---------------------------|
| /장비기군 | 유형 | 사립도 | (억원)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전 체 | | 1,496 | 9,997 | | | | | | | | | | | | |
|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 | 162 | 210 | ·국민건강보험 |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 | | | | | | | | |
| 추가 지원 | 폐지 권고 - | 163 | 219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일부지원 ·저소득계층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 | | | | | | | | | |
|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 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 | 74 | 393 | ·기초연금 | -장수수당 등 | | | | | | | | | | |
|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 રો ભેગી | 101 | 191 768 - | ・교육급여(교육부) | ·저소득층 교육지원 ·보호아동 중고등학생 참고서지원 등 | | | | | | | | | | |
| (맞춤형 급여제도) | | 131 | | ·주거급여(국토부) | ·사랑의 집짓기사업 ·희망의집 임대주택 등 | | | | | | | | | | |
| | 용 변경, 타사업 과 통폐합 | 용 변경, | | 용 변경, | 용 변경, | 용 변경, | 용 변경, | 용 변경, | 용 변경, | 용 변경, | 용 변경, | | | ·장애인활동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활동지원 |
|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 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 | | } | 8,617 | ·노인돌봄사업 | ·노인 목욕서비스 ·경로위생수당 | | | | | | | | | | |
| 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 | |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이주여성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 | | | | | | | | | |
| | | | | ·긴급복지 |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 | | | | | | | | | |

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2015

<표 4> 유사·중복 사업 정비 기준

| 구분 | 정비기준 | 공통기준 | | | | |
|-----------|---|---------------------|--|--|--|--|
| 사회 보험 |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으로 정비 | 사업 중 법률에 |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 | | | |
| |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15.7)에 | 제도의 통일성, 지역간 형평성 | ■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부적합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 하는 추가급여 지급 및 대상자 확대는 원칙적으로 정비 | | | |
| 공공 부조 | 따라 기존 지자체 사 업과의 상호보완성을 | 유사·중복, 누락,편중 |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비 | | | |
|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추진 권고 | 전달체계에미치 는 영향 | ■기존 전달체계를 우선 활용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강구 | | | |
| | ■사회서비스 급여 대 상자 확대는 가능 | 지자체별 여건 | ■지자체별 재정 상황, 인구 구조 등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 간 변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정비 | | | |
| | ■ 공급기관보다는 수요 | 비용/효과 |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정비 권고 | | | |
| 사회 서비스 | 자지향 서비스 권고 **소득수준에 따른 본 인부담금을 차별화하 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충 | 기타 |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혜자의 근로의욕이나 자활의지 제고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자체자체 점검을 통해 급여/서비스 방식 정비 권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개념으로 전환 검토 | | | |

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2015

3) 기준별 사업 내용과 문제점

○ 이러한 내용을 기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함. 아울러 이 기준이 가지고 있는 맹점 또한 제시코자 함.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중앙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권고하고 있음. 지자체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이 해당.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중복이유로 지자체의 노인장기요양본인부담금 일부지원사업과 저소득층계층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폐지권고에 해당 이에 대해 정부는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 등으로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 〈표 5〉 | 시의다허 | 보이부단근 | 츠기지의 | 혀화 |
|-------|------|-------|------|----|

| 시도 | 시군구 | 사업명 | 사업목적 세부분류 | 대상 | 내용 | 예산 (백만원) |
|----|-----|--|---------------------|--|---|-------------|
| 서울 | 강동구 | 노인복지 개선 (저소득노인 건강 보험 및 장기요 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차상위 노인, 노인 외 장기요양주민 중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 주민,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 20 |
| 경기 | 구리시 | 차상위계층 건강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월 1민1천원 미만인 65세 이상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세대 | 보험료 전액 | 6 |
| 전북 | 군산시 | 저소득계층 장기 요양급여비용 본 인일부부담금 지 원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 군산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월 건강 보험료(3개월 평균) 1만원미만세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기타의료급여 수급자제외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 담금 납부액의 50%이 내 지원 (월 최대지원액 5만원) | 65 |

(반박)

-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자체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그 대상이 저소득층이며, 지원수준 도 지자체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과 중복되지 않음 (지역, 계층, 지원수준 차이).
- ·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건강보험 이용의 장애가 발생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다. 본인부담금제도 취지가 의료서비스 이용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통제수단이 되고 있음. 불완전한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선택적으로 일부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지원하는 것을 불가하는 것 자체가 사회연대성을 훼손하는 것임.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급여도 폐지를 권고하는 사업군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수수 당 등의 경우 기초연금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판단하고 있음.

<표 6>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현황

| 시도 | 시군구 | 사업명 | 사업목적 세부분류 | 대상 | 내용 | 예산 (백만원) |
|----|-----|---------|--------------|---------------------------|--------------------------------|-------------|
| 충남 | 천안시 | 장수수당 지원 | 장수수당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 85세이상 노인 | 85세이상: 월 3만원 100세이상: 월 10만원 | 720 |
| 충북 | 영동군 | 장수수당지급 | 장수수당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 80세이상 노인 | 월 3만원 | 1,188 |
| 세종 | | 사회활동장려금 | 장수수당 | 관내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 | 월 5만원 | 2,100 |

(반박)

- · 사실 장수수당은 지자체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도입시행하고 있음. 경로효친의식의 고양과 인구 유지 및 유입정책(인구정책)을 위한 소득지원 등이다. 따라서 또한 심각한 노인빈곤율에 비해 여전히 국 민연금급여자는 적고, 기초연금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장수수당의 유용성은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음.
- · 따라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도입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성급여라는 이유로 폐지 를 권고하는 것은 부당.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맞춤형 급여제도)

-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사업군으로 지자체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보호아동 중고등학생 참고서 지원 등이 교육부의 교육급여와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내용 변경하거나 타사업과 통폐합하라는 것임. 또한 지자체의 사랑의 집짓기사업 등이 국토부의 주거급여와 중복됨을 지적하고 있음.

〈표 7〉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현황

| 시도 | 시군 구 | 사업명 | 사업목적 세부분류 | 대상 | 내용 | 예산 (백만원) |
|----|---------|--------------------------------------|---------------------------|--|---|-------------|
| 전북 | 정읍 |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 | 관내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중 성적 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봉사활동 우수자 | 중학생 연 2회 20만원/인, 고등학생 연 2회 40만원/인 | 11 |
| 울산 |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 학비 (등록금- 입학금) 지원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진학자 | 500만원/인 | 140 |
| 전남 | |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택시설 개선 | 자가 주택소유자 등에 해당하는 70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으로 차상위계층 120% 이내의 거동불편자등 (기초수급자 제외) | 수세식화장실, 입식부엌, 양변기 설치,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상하수도 및 담장 수선 등: 300만원/개소 | 660 |

(반박)

·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중복되는지 여부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과 여건의 차이와 주민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지자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역복지를 무시하는 조치임.

⑤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군으로 지자체의 중증장애 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중복됨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타사업과 통 폐합하라는 것임.
-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목욕서비스, 경로위생수당이 복지부의 노인돌봄사업과 중복, 이주여 성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중복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긴급 지원이 복지부의 긴급지원과 중복된다는 것임.

<표 8> 중앙정부 시업의 보충적 시업 중 시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시업 현황

| 시도 | 시군구 | 사업명 | 사업목적 세부분류 | 대상 | 내용 | 예산 (백만원) |
|-----|-----|-------------------------------------|---------------------|--|---|-------------|
| 경기도 | 용인시 |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활동지원1등급 최중증 | 활동지원1등급 최중증(독거및취약): 월 192시간 활동지원1등급 (최중증 외): 월 20시간 | 500 |
| 전남 | 나주시 | 이동통합서비스사업 (이동목욕 사업 및 재가 복지사업) | 위생지원 | 60세 이상 일반 노인 및 거동 불편 노인 | 이동목욕운영, 재가복지사업 (유급봉사원 인건비지원) | 92 |
| 충남 | 공주시 |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 다문화/새 터민 정착지원 |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자녀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교육지원 내용: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교 운영. 다사랑 봉사단 운영,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이해교육 연수 운영 등 | 20 |
| 경기 | 과천시 | 저소득 틈새지원 | 기급구호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70미만인자 총재산 7,750만원 이하 | 난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료 | 4 |

(반박)

·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자체 사업이야 말로 지역현실에 기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고 틈새를 채우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섬세한 지자체 사업이야 말로 지방정부의 고유의 역할인 것임. 이러한 보충적 성격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의 당연 사업으로 오히려 권장해야 함.

3. 「정비조치」가 지닌 법률적 문제점의 문제점과 정부 근거의 검토

1) 정부가 제시한 근거의 부적합성

- 정비지침에 의하면,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 근거 법률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와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에 두고 있음(〈표 9〉참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1항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이며 여기서 제7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부담이며 제9호는 사회보장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에 대한 것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9〉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 근거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 |
|---|--|---|
| 제2항 제7호 및 제9호 | 제15조 | 제166조 제1항 |
| 1.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관련 주요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 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5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협의에 필요한 서류 |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 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

- 이에 대한 근거법률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사회보장사업법과 관련해서는
- 첫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열거한 내용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중앙정부와 개별 지자체 간

의 개별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특별규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²⁾임. 이 규정을 이번 정비방안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이 적용되는 시간적인 한계는 동 조항이 발효된 2013년 1월 27일부터이고 그 이전에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는 적용할 수 없음.

- 둘째, 제7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안이 지자체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분담에 해당되지 않음.
- 셋째, 제9호는 사회보장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인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전달체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동법 제2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해 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운영상의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하고 민간부분과의 연계노력을 규정³⁾하고 있을 뿐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음으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는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함.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언, 권고, 지도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지자체가 헌법 및 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라는 내용에 관하여는 자치사무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가의 감독권은 대부분 위임사무에 국한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범위는 위법성 감사에 한정되며, 이를 넘어선 포괄적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 라고 판시한 바 있음.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²⁾ 제26조 (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³⁾ 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 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⁴⁾ 헌법재판소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범위를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데, 감사개시에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어디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은 합목적성 감사보다는 합법성 감독을 지향하여야 하고 <u>중앙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u>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5.28. 2006헌라6

2) 지방자치에 대한 위법성의 근거

- 이번 「정비조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여타 법률에서 규 정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임.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1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임. 그 구체적인 법 조항은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10〉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근거 법률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제23조, 제24조 |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4조 |
|---|---|--|---|
| 제117조 관련판례관련문헌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 산을 관리하며, 법령 의 범위안에서 자치 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할 수 있다. |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가 차 〈생략〉 | 제22조 (평생안전망의 구축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 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 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 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 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 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 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조 (정의) 1 * 4.〈생략〉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 첫째,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의 책임이 지자체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 둘째,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사무와 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무 중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이에 대한 사·군구의 종류별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자치사무에 해당
- 셋째, 소위 박근혜법으로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⁵⁾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 대해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서비스 시책 및 소득보장제도 마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넷째, 박근혜정부에서 제정한 사회보장급여법60에서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사회보장급 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보장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 해야 하고 급여의 충분성과 적절성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급여의 제공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 하고 있음.

4. 「정비조치」에 대한 시민사회복지계의 대응 전략

- 이제까지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번 「정비조치」는 주민의 복지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명백히 반복지적, 반법률적 조치에 해당함. 그 방식도 지자체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렇다면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국면을 타파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현 국면의 심각성과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와 이에 근거한 노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
-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것은 권한쟁의 신청이라할 것임.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 침해 된 것을 시정하는 하나의 구제수단으로 법률이 부여한 것이 바로 권한쟁의 신청임. 이미 서울 16개 자치 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22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권한쟁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있음.
- 또한 지자체는 「정비조치」에 의해 시달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예산 제외라는 주문을 행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임. 지자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사회의 주문과 감시, 의회

⁵⁾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에 동료의원 123인과 함께 발의한 것으로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⁶⁾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평소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기조를 갖고 있었던 바, 차제에 이를 기회로 복지예산 축소를 행하는데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바 임.
- 지역주민의 복지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복지단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미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가 꾸려져 100여개 이상의 단체들이 가입한 상태에서 성명서 발표를 비롯하여 공청회 개최와 서명작업, 항의방문 등을 행하기 시작하였음.
- 대전, 인천을 비롯하여 여러 시도에서 지역단위의 공동대책위를 꾸려 위에서 말한 바대로 지자체 스스로 이러한 국면에서 자신들이 행해야할 지방자치의 수호와 주민복지의 옹호라는 역할을 행하도록 압박하고 추동하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전국적 단위와 지역적 단위 양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시정을 요하거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복지사업을 실제 행하는 각 시설이나 관련 협회에서도 이러한 국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 적 극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과 같이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타격이 있는 영역을 포함하여, 자신들이 사업을 행하고 있는 지역과 집단에 있어 복지급여가 축소되고 복지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좌시하면 차후 다른 사업과 영역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간섭과 축소조치가 확산될 것임을 생각해야 함.
- 이런 점에서 다른 시민단체 및 협회 등과 연대하여 이 국면을 정상화하는 데에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임.
- 결국 이번 「정비조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복지에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각기 어떠해야 하며 그들 간의 관계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음.
- 그런 가운데 지역 주민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가 이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지 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스레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

[참고자료 1] oleth 교수 언론 기고문

[아침을 열며] 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라는 긴 제목의 공문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복지부 장관이 간사인 사회보장위원회란 곳에서 전국 지자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총 5,891개의 사업을 이 잡듯 조사해 보니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도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단다. 그리하여 그 중 25.4%에 해당하는 1,496개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통보한단다. 이로 인해 무려 9,997억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이것을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면 승인절차를 간단히 해주는 배려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지자체가 방만하게 쓰고 있던 낭비성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바로잡겠다니 말이다. 그간 보편적 복지 운운하며 지방정부의 예산 중 복지 비중을 마구 늘리던 자치단체장들의 정신나간(?) 행보를 우려하던 이들에겐 속 시원한 조치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과연 진실은 어떨까?

강원 원주시에 사는 부부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월 2만원 미만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받아 왔다. 만 10세까지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골절, 화상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중단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나 급여비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이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만 85세 어르신이 효도수당으로 연 2회에 걸쳐 9만원씩 받던 것도 중단될 예정이다. 다른 수많은 지자체에서 행하는 어르신을 위한 수당 지급도 모두 중단된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지자체가 추가로 주는 것은 선심성이란다. 아동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현금 수당성 지원도 거의 중단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받던 구청의 추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던 전국의 지자체 사업도 중단된다. 중앙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복이란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결연히 중단을 통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수당, 보험료·융자금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국민들은 646만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170만명이고 인천이 97만명, 서울 87만명, 대구 가 65만명 등이다. 영향을 받는 인구 규모 면에서 본다면 최근 중앙정부의 어떤 조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국민에게는 대참사요, 중앙정부로서는 최대의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조치는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등 수많은 법들과 충돌한다. 행정부 내에 최소한 법리를 점검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기존 법과 상충 여부를 떠나 이런 엄청난일을 사회보장위원회의 몇몇 공무원과 전문가연 하는 이들이 모여 결정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일방적인 처사가 30년 가까운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걸 맞는 일인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깎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기민하게 바꾸는 모습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큰 틀을 짜면, 지방정부는 스스로 주민들의 추가적인 욕구와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난폭한 행정에 다름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라고 말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는 한 자치단체장의 힐난이 헛말이 아니다. 당장 이 난폭한 처사를 거둬들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럴 권한과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 출처 : 한국일보 2015. 10. 12일자

[참고자료 2] _{사회보장정비위 공문}

골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보건복지부



소신 소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

- 1.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15,8,11) 관련입니다.
- 2. 위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함 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붙 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 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1부.
 - 2. 시?도별 정비 추진단 구성현황 작성 양식 1부.
 - 3. 정비 대상 사업 목록 및 정비계획(실적) 작성 양식 1부(별도송부).
 - 4.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작성 양식 1부(별도 송부). 끝.

보건복지 부장관

· 수신자 · 서울특별 시장, 부산관역시장, 대구관역시장, 인원관역시장, 관주관역시장, 대전관역시장, 용산관역시 잘 : 결기도자사, 갑원도자사 : 출청북도자사 : 출청남도자사 , 전라북도자사 , 전라남도자사 : 결삼남도자 사, 검삼북도자사, 제주특별자치도자사, 세줌특별자치시작

*=2

램격사무관

사회보잘조절과

사회보잘위원회

출조자

시험 사회보잡조절과~889

(2015.08.18.) 절수 복지점책과~4009 (2015.8.17.)

우 301-13 개 45로 교자되시 도움4로 13 브건복지부 절부세출철/http://mw.go.kt

전화 02-8020-8885 /전술 504-4202-8955 / saw78@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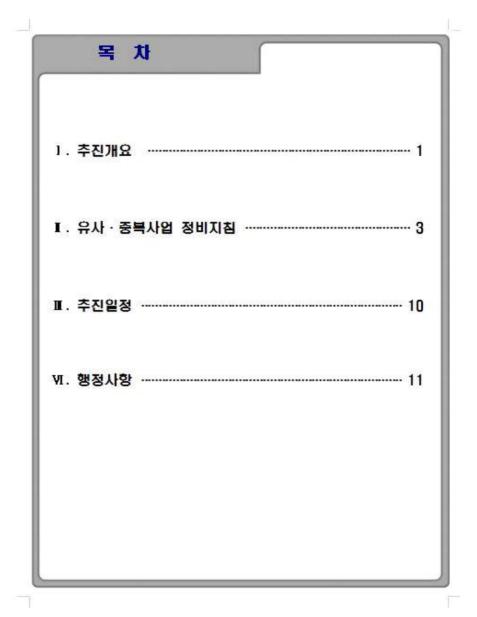
/ 골개

[참고자료 3] _{사회보장정비위 정비지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2015. 8.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I.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 (현황) 그 간 사회보장사업은 양적·질적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 증가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 연금 건강 등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분야도 대폭 확충
 - * '15년 정부 총지출 375.4조원 중 복지분야는 115.7조원(30.8%)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7.0%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를 상회
- (지방자치단체) 자치제 도입 20년간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 * '15년도 지자체 시회복지분야 지출비중 27.8%('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
- □ (문제점) 지속적인 복지사업 확충으로 복지제도의 외형적 틀 완성 등 성과도 있었지만 투입 대비 효과성 등 내실화는 미흡
-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이 부처별로 시행되어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사업간 전달체계의 연계성 미흡
-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도 다수 발생
- □ (개선방향)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복지제정 효율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필요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를 추진
- 집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

-1-

2 그 간의 경과

- □ 사회보장위원회는 '13년 이후 사회보장사업간 유사·중복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
- a 기존 사회보장사업은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 스 신규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통해 유사·중복 문제를 사전에 차단
- □ 기존 사회보장사업과 관련, 우선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하여 360개 사업을 297개 사업으로 정비(△63개)
- 사회보장사업(360개)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유사·
 중복 후보 사업군 발굴(*14:11~*15.2)
-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비 필요사업 선정(20개 사업군, 48개 사업)
 하여 정비 추진(*(15.2 ~*\15.5)
- * (부처간) 37개 사업, (복지부대) 11개 사업
-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정비 추진
- a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5.4~7, 복지부보사연)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
- 그 결과, 전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은 5,891개 **사업으로 꽈악**

_ < 유사·중복시업 정비추진 근거 법률 > __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

- O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사회보장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
-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 할 수 있다.

- 2 -

Π.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침

기본 방향

-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되,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은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 추진
 - * (구성) 사보위 사무국, 17개 시·도(단장: 부단체장), 관련부처, 보사연 등
- ◇ 금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 동 재원을 활용한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혐의절차 간소화

정비 방향

-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되,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은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등이 **혐의회를 구성하여 정비 추진**
- (통·폐합)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 중앙정부 신규사업(맞춤형 복지)과 중복사업 등
- 스 (효율화)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종류, 수준, 전달체계 등 정비
- □ 금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 중앙-지방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 추진
 - * 협의회 지원을 위해 보사연 주관으로 자운그룹을 구성하여 시·도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비결과를 사후검증

2 정비 대상

- □ '15.4~7월 실태조사(복지부·보사연) 결과 파악된, 지자체에서 **국고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 a (유사·중복) 연구용역 결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 * 정비대상 시업 목록은 별도 송부(보건시회연구원), 등 목록 참조·정비 추진
- (자체발굴) 지자체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3 정비대상 사업군

- ① 사회보험 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1637H 사업, 219억원)
-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
-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74개 사업, 393억)
- 중앙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기초연금)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사 성격의 현금성 급여
-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맞춤형 복지)과 중복 되는 사업(1917H 시업, 768억원)
-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이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15.7월)됨에 따라 **동 제도와 중복 될 여**지가 있는 지자체 사업
-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의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1,068개 사업, 8,617억원)
- ◇ (보훈수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훈수당 등은 지자체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금번 정비대상에서 제외함.

- 3 -

- 4 -

<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군 >

| TENNET | 401.4 | 여산 | 유사중 | 복 사업군 |
|---------------------------------|-------|---------|--------------|--|
| 정비기준 | 사업수 | (여원)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 전 체 | 1,496 | 9,997 | | |
| (1) 사회보회 본인부당급 | | | · 국민건강보험 | ·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 에 자회보임 본인두점금 추가 지원 | 163 | 219 | · 노민장기요양보험 | · 노인장기요항 본인 부담금 일부지원 · 저소득계층 장기요항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
|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 74 | 393 | · 기초연금 | · 장수수당 등 |
| ②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 191 | 768 | · 교육급여(교육부) | · 저소특층 교육지원 · 보호아동 중고등학생 참고서지원 등 |
|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 191 | 51000 0 | · 주거급여(국토분) | ·사랑의 집짓기사업 ·최앙의집 임대주택 등 |
| , | | | · 장애인활동지원 | · 중중장애인 활동보조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 | | · 노인돌복사업 | · 노인 목욕서비스 · 경로위생수당 |
|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 1,068 | 8,617 |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이주여성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
| | | | · 긴급복지 | ·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

4 유사 중복 정비기준

□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별로 정비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정**비

| 구 분 | 정비기준 | | 공통기준 |
|-----------|--|---------------------|--|
| 사회보험 | ■5대 사회보험과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으로 정비 |
| 몽공부조 |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 제도의 통일성, 지역간 형평성 |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취지며 부적합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크게 저히 하는 추가금여 지금 및 대상자 확대는 원칙적으로 정비 |
| | 제도 도입(157)에 따라 기존 지자체 사업과의 상호보완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정비 추진 권고 | 유사·중목, 눈람,편중 |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비 |
| | |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 ·기준 전달체계를 우선 활용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강구 |
| | | 지지체별 여건 | • 지자체별 제정 상황, 인구 구조 등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간 변화한 여건을 중합적으로 검토 후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정비 |
| | 사회서비스 급여 대상자 화대는 가능 공급기관보다는 수요자 | 비용/효과 | ·제정투임 규모에 비해 효과가 저초한 사업은 정비 권고 |
| 사회 서비스 | 지향 서비스 권고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차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충 | 기타 | • 유사중목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해자의 근로의욕이나 자활의지 제고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 점검을 통해 금여/서비스 방식 정비 권고 •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록' 개념 으로 전환 검토 |

- 5 -

5 시 도별 조치필요 사항

1 추진단 구성 및 정비 계획수립

- 시·도별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단창 : 부단체장)^{*}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
- * 사보위 사무국, 시·도별 추진단,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사회보장 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정비 추진
- 추진단 책임하에 지자체에 시달된 정비대상 사업 등을 검토한 뒤
 시·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보위 사무국에 제출(15.9.25)
- 각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정비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방향, 대상사업 선정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의 자문그룹에 컨설팅 등 요청
- * 정비대상 시업과 정비계획 제출양식은 시도별로 별도 송부예정(보사연)

< 사업군벌 정비유형 >

| 사 업 군 | 정비유형 | 비고 |
|--|-----------|----------------------------------|
|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W 71 21 2 | 즉시폐지가 곤란한 |
|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 폐지 권고 | 경우 단계적 폐지 추진 |
| ② 중앙정부 신교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 사업내용 변경, |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꾀하기 위해 |
| ③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 타사업과 통폐함 | 사업내용을 변경하 거나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 |
| ⑤ 자체발굴 사업 | 폐지, 변경 등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추진 |

^{* (}예시) 장수수당 지금기준을 연령이 아닌 출생연도로 변경

2 정비추진

-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16년 예산안 반영, 조례 개정 등 정비추진
- * 단계적 폐지사업은 정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
- △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협업 실시(보사연 주관)
- (설명회) 9월초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비방향, 정비요령 등 설명예정
- (간담회) 9월말~10월 중순 시·도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의 해소를 위해 컨설팅 등 제공예정

③ 정비결과 제출

- a 제출한 계획에 따른 **주진실적을 사보위 사무국에 제출**('15.11.27)
- (1차)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15.11.27)
- (2차) 지방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16.1.15)
- * 결과제출 양식은 9.27일까지 제출한 추진계획 양식과 동일

4 신규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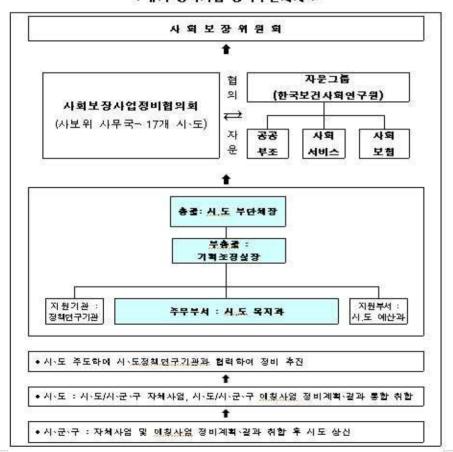
- A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함께,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투자 권장
-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개선한 타 지자체 사례 참고를 위해 보사연에 설치될 사회보장정비협의회 자문그룹과 협의 요망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의 신설·변경 협의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
- * 정비계획 제출시 신규사업 리스트도 제출(정비계획 양식과 함께 별도송부 예정)

-8-

5 결과점검 및 향후조치

- △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검 실시
- * (단장) 국무조정실장, (간사) 기재부, 복지부, 행자부 차관, (구성) 국토부 차관 등 15개 부처
- 스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실적을 반영
- * (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행자부) 지자체 합동평가

<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체계 >



Ⅲ. 추진 일정

| 추 진 과 제 | 추 진 일 정 |
|---------------------------------------|---------------|
| ㅇ 시ㆍ도벌 정비추진단 구성현황 제출 | '15.8.21(금) |
| ㅇ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권역별 설명회 개최 | '15.9월초 |
| ㅇ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시ㆍ도별 간담회 개최 | '15.9월말 ~10월초 |
| ㅇ 시ㆍ도별 정비계획안 제출 | '15.9.25(금) |
| ㅇ 시·도별 정비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운위원회) 보고 | '15.10월초 |
| ㅇ 정비결과 제출(1차) | '15.11.27(금) |
| ㅇ 지자체 정비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15.12월 |
| ㅇ 정비결과 제출(2차) | '16.1.15(금) |

- 정비계획 및 결과 제출 등은 공문으로 송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보시연의 정비 관련 컨설팅은 정비 추진 기간 중 지속 실시

IV. 행정 사항

1 (제출자료) 시·도 책임하에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제출자료 >

| 구 분 | | 계출일자 | 核熱脈 | 계출방식 | 계출앙식 | |
|---------------------------|---------------------|--------------|------------------|----------------|------------------------|--|
| 추진 단 구성현 | 진단 구성현황 '15.8.21(금) | | | | 불임2 참조 | |
| 정비 계획 (신규사업 포함) | | '15.9.25(音) | 보건복지부 사보위 사무국 | 공문제출 | 별도송부 | |
| 정비결과 | 1차 | '15,11,27(금) | 사회보장조정과 | SSS040 - 00082 | (시·도 담당자) • 동일양식 활용 | |
| (신규사업 포함) | 2차 | '16.1.15(금) | 7 | | · 등등장의 활동 | |

② (연락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컨설팅 요청, 간담회 개최 등 문의사항은 보사연에 설치된 사회보장정비협의회 자문그룹으로 연락

a 시·도에서 시·군·구 문의사항을 취합하여 문의

< 자문그룹 연락처 >

| 구분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
| SKA STA | 정홍원 연구위원 | 044-287-8217 | T |
| 보사였. | 임성은 전문연구원 | 044-287-8274 | sungelim@kihasa.re.ki |
| 사보위 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 선숭완 주무관 | 02-6020-3335 | ssw73@korea.kr |

[참고자료 4] 충북도&시군 사회보장정비 대상 사업목록

| 사업유형 | 시군구 | 사업명 | 시업목적 세부분류 | 대상 | 내용 | 시도예산 (백만원) | 총예산 (백만원) | 백만원 단위고정 |
|------|-----|------------------------|-----------------------|--|---|---------------|--------------|-------------|
| 시군구 | 괴산군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월1만원미만이차상위65세이상노 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세대 |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 | 25 | 25 |
| 시군구 | 괴산군 | 다문화기족부부교육 | 다 문화 / 새 터 민 정착 지원 | 부부교육이필요한다문화부부(20쌍) | 전문교육 실시 | | 5 | 5 |
| 시군구 | 단양군 | 노인복지운영 | 장수수당 | 관내거주만83세이상노인및중풍·치매등 중증질환재가노인 | 83세 이상: 월 3만원 지급 100세 이상: 월 10만원 지급 명절 물품지원(5만원) 250개의위생용품(기저귀)제공 | | 446 | 446 |
| 시군구 | 단양군 | 위기가정 긴급생활지원 | 긴급구호 지원 | 관내 생계,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활 발 생 기구 | 1인:50만원2~3인:60만원4~5인:70만원6인 이상:80만원 | | 20 | 20 |
| 시군구 | 단양군 | 장애인복지사업 | 출산장려 지원 | 관내1년계속거주등록(1~6급)장애인 | 장애 1~2급: 100만원 장애 3~6급: 70 만원 (쌍생아 이상은 50% 추가지급) | | 63 | 63 |
| 시군구 | 단양군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보험료월1만원이하차상위계층 | 보험료 | | 25 | 25 |
| 시군구 | 단양군 | 지역이동복지서비스 지원 | 생활비용 지원 | 만18세미만의 이동으로 조부모 또는 외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또는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세대 -단,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 가정위탁세대는 대상에서 제외 | 월 7만원/인 | | 34 | 34 |
| 시군구 | 단양군 | 지역이동복지서비스 지원 | 생활비용 지원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아동, 조부모의 연령은 60세 이상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또는 손 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월 7만원 | | 36 | 36 |

| 사업유형 | 시군구 | 시업명 | 사업목적 세 부분류 | 대상 | 내용 | 시도예산 (백만원) | <u>총예산</u> (백만원) | 백만원 단위고정 |
|------|-----|---------------------------|--------------------------|--|---|---------------|---------------------|-------------|
| 시군구 | 보은군 |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 보은군거주결혼이주여성및농촌총각 | 학용품비지원: 월 5만원 이주여성매칭지원: 월1~5만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5백만원 친정 나들이지원: 3백만원 | | 110 | 110 |
| 시군구 | 보은군 | 여성노인일자리사업 | 노인 일자리 | 만60세이상여성노인일자리사업참여조 건에부합하는자-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접수순서에따라건강등을고려하여 "참 여자선발기준표" 를작성하여고득점자 순으로선정 | -보수: 최대 20만원/인 -근무시간: 일3시간, 주3일, 월36시간 | | 44 | 44 |
| 시군구 | 보은군 | 여성장애인출산 비용 지원 | 출산장려 지원 | 여성장애인 | 1인 100만원 | | 3 | 3 |
| 시군구 | 보은군 | 위기가정지원 | 긴급구호 지원 | 위기 가정 | -재난으로 인한 수리비, 기초생활비 지원, 의료비 및 진단비 지원, 기타 필요한 경비 지 원 -진단비: 장애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 비, 정신과 심리진단 심리치료비, 알콜중 독·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 및 진단과관련된 검사비 등 -생활지원비: 욕창방 지,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 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 시가스 체납액 등 | | 10 | 10 |
| 시군구 | 보은군 | 장수노인 수당지원 | 장수수당 | 관내거주만90세이상노인 | 월 3만원 | | 79 | 79 |
| 시군구 | 보은군 |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 기요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월1만원이하인65세이상노인단 독,장애인,모부가정세대 | 보험료 | | 46 | 46 |
| 시군구 | 보은군 | 저소득층 화재보험 지원 | 긴 급구 호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재사고로인한직접,소방,피난피해,잔존물제 거비용등-건물1,000만원-가재도구500만원 | | 15 | 15 |

| 사업유형 | 시군구 | 시업명 | 사업목적 세부분류 | 대상 | 내용 | 시도예산 (백만원) | <mark>총예산</mark> (백만원) | 백만원 단위고정 |
|------|-----|------------------------------|--------------------------|--|--|---------------|---------------------------|---------------|
| 시군구 | 영동군 | 군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 관내다문화가족으로등록된가족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 학습지도사 지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 모 국국제 특송요금 지원 | | 86 | 86 |
| 시군구 | 영동군 | 노인활동보조기지원사업 | 보장구 지원 | 노인성질환으로거동이불편한저소득65 세이상노인 | 보행보조차 지급 | | 8 | 8 |
| 시군구 | 영동군 | 장수수당 지급 | 장수수당 | 관내1년이상거주한만80세이상노인 | 월 3만원 | | 1,188 | 1,188 |
| 시군구 | 영동군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 생활자금 대출 | 자립의욕이강한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 는차상위계층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 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대학교의 학자금,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1,000만 원(1.5%,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480 | 480 |
| 시군구 | 영동군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 여가/문화활동 지원(아동청소 년) | 관내 초·중·고 청소년 | 한마음축제, 응급처치경연대회, 명예경찰소 년단, 작은사랑나누기 행사 | | 20 | 20 |
| 시군구 | 옥천군 |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 | 학비(등록금- 입학금) 지원 | 관내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 연 90만원/ 인 | | 25 | 25 |
| 시군구 | 옥천군 | 사랑의집수리사업 | 주택시설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 자이면서 주거유형이 자가 기구 또는 전체무료임차 기구 | 집수리: 200만원/세대 | | 40 | 40 |
| 시군구 | 옥천군 | 생활안정자금운영 | 생활자금 대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전문대 학이상 학자금 -1,000만원/세대(2%, 2년 거 치, 2년균등분할상환) | | 608 | 608 |
| 시군구 | 옥천군 | 이재민 구호 및 재해 복구 | 재해 구호 및 보상 | 재해로피해를입은이재민 | 보상금, 민간인 복구활동수당,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 | | 4 | 4 |
| 시군구 | 옥천군 | 입양축하금 지원 | 아동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 관내 만 3세 미만 입양이동과 양부모 | 입양시 20만원/ 기구 | | 0 | 0 |
| 시군구 | 옥천군 | 장수수당 지급 | 장수수당 | 관내6개월이상거주한만90세이상노인 | 월 5만원 | | 288 | 288 |
| 시군구 | 옥천군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료 지원 | 건 강 보 험 료 지원 | 보험료월1만2천원미만인65세이상노인, 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세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69 | 69 |

| 사업유형 | 시군구 | 시업명 | 사업목적 세 부분류 | 대상 | 내용 | 시도예산 (백만원) | 총예산 (백만원) | 백만원 단위고정 |
|------|-----|------------------------------|--------------------------|--|---|---------------|--------------|-------------|
| 시군구 | 음성군 | 노인생활보장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주소를둔지역가입자로65세이상 노인,장애인세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56 | 56 |
| 시군구 | 음성군 | 시각장애인 점자, 컴퓨터 교 육 지원 | 장애인 교육 지원 | 시각장애인 | 점자 교육 및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시각장애인용 학습 프로그램, 인터넷 방송 청취 등) | | 9 | 9 |
| 시군구 | 음성군 |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 보육교사 지원 |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 월 5만원/ 인 | | 360 | 360 |
| 시군구 | 음성군 |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에주소를둔지역가입자로서보험 료월1만원미만인65세이상노인,장애 인세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 16 | 16 |
| 시군구 | 음성군 |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 지역이동센터 지원 | 신고한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장비 기능보강 자산취 득비 | | 19 | 19 |
| 시군구 | 음성군 |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지원 | 지역이동센터 지원 | 관내 지역아동센터 | 냉난방비 | | 25 | 25 |
| 시군구 | 음성군 |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지원 | 지역이동센터 지원 | 지역이동센터 이용아동 | 현장체험학습 | | 68 | 68 |
| 시군구 | 음성군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 9세~24세 관내 청소년 | 학습지도, 학습실운영, 도서대여, 무료 영어학습 | | 30 | 30 |
| 시군구 | 제천시 |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장애 1급자 중 독거, 기초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 120% 이내 및 초과자 | 활동보조 및 가사지원 | | 12 | 12 |
| 시군구 | 제천시 | 보육시설종사자교육강사수당 | 보육교사 지원 | 어린이집보육교직원대상교육강사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 | 1 | 1 |
| 시군구 | 제천시 | 장수수당 지원사업 | 장수수당 | 관내1년이상거주한만85세이상노인 | 월 3만원 | | 540 | 540 |
| 시군구 | 제천시 | 저소득 주민(노인) 건강보험 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거주하는지역가입자로보험료월1 만원미만인저소득65세이상노인세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66 | 66 |
| 시군구 | 제천시 | 저소득 한부모기족 건강보험 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생계비130%이하인보험료월1만 원이하저소득한부모가족 | 보험료 | | 4 | 4 |
| 시군구 | 제천시 | 청소년시설운영 |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 만9세 ~ 만24세 청소년 | 방과후 <u>프로그</u> 램 | | 60 | 60 |
| 시군구 | 제천시 | 한부모기족 중고등학생 자녀 특기적성활동비 지원 |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 최저생계비130%이하저소득한부모가 족의중고등학생자녀 | 월 5만원/ 인 | | 225 | 225 |

| 사업유형 | 시군구 | 사업명 | 사업목적 세부분류 | 대상 | 내용 | 시도예산 (백만원) | <mark>총예산</mark> (백만원) | 백만원 <u>단위고정</u> |
|------|-----|-----------------------------|-------------------|---|--|---------------|---------------------------|--------------------|
| 시군구 | 증평군 | 저소득층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아니며관내주민 등록을둔지역가입자로서보험료월1 만원이하인65세이상노인,장애인,한 부모세대 | 월 1만원 이내 | | 18 | 18 |
| 시군구 | 증평군 |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 학습 지원(공부 방 포함) | 9세~24세 청소년 | 학습지도, 진로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 | | 10 | 10 |
| 시군구 | 진천군 | 문화활동비지원 | 여가/문화활동 지원(성인) | 저소득 한부모 전세대 | 10만원상당문화상품권 | | 12 | 12 |
| 시군구 | 진천군 | 보육교사 및 급식종사자 복리후생비 지급 | 보육교사 지원 | 동일어린이집1년이상근속보육교직 원및급식종사자 | 월 5~8만원/ 인 | | 99 | 99 |
| 시군구 | 진천군 | 생활환경개선지원(저소득가 구 집수리 지원) | 주택시설 개선 | 자가가구및무상임차에해당하는기 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 500만원/세대 | | 40 | 40 |
| 시군구 | 진천군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 생활자금 대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중 60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 1,000만원 한도/세대(10%, 3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100 | 100 |
| 시군구 | 진천군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지역 가입자로보험료월1만원이하65세이 상노인,장애인,모부자,소년소녀가 장,조손세대 | 월1만원이내 | | 17 | 17 |
| 시군구 | 진천군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 수당 지원 | 지 역 아 동 센 터 지원 | 관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생 활복지사 | 월 7만원/ 인 | | 14 | 14 |
| 시군구 | 진천군 | 지역아동센터 차량운행비 지원 | 지 역 아 동 센 터 지원 | 차량을이용하여아동의안전귀가서 비스를제공하는관내지역아동센터 | 월 20만원/ 개소 | | 19 | 19 |
| 시군구 | 진천군 | 진천군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지원 | 만65세이상독거노인 | 노인문제, 일상생활,기족상담 등,독거노 인일상생활 및 중점관리대상자사례관리, 지역지원연계지원, 생활교육 및 우울증 예방 교육 등 | | 118 | 118 |
| 시군구 | 진천군 |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에서학원을수강 하는자녀 | 월 6만원/인 | | 49 | 49 |

| 사업유형 | 시군구 | 사업명 | 사업목적 세 부분류 | 대상 | 내용 | 시도예산 (백만원) | 총예산 (백만원) | 백만원 단위고정 |
|------|-----|----------------------------|--------------------------|---|---|---------------|--------------|-------------|
| 시군구 | 청주시 |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 | 관내6개월계속거주출산장애인 | 장애 1~2급: 150만원 장애 3~4급: 100만 원 장애 5~6급: 70만원 타제도 지원받는 경우 차액지급 | | 27 | 27 |
| 시군구 | 청주시 | 장난감 도서관 운영 | 아동 돌봄 지원 | 청주시민 | 장난감대여 | | 104 | 104 |
| 시군구 | 청주시 | 장수수당 지원 | 장수수당 | 관내1년이상거주한만85세이상노인 | 월 4만원 | | 669 | 669 |
| 시군구 | 청주시 | 장수수당 지원 | 장수수당 | 관내1년이상거주한만85세이상노인 | 월 4만원 | | 936 | 936 |
| 시군구 | 청주시 | 장수수당 지원 | 장수수당 | 관내1년이상거주한만85세이상노인 | 월 4만원 | | 936 | 936 |
| 시군구 | 청주시 |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로보험료월1만원이하저 소득65세이상단독,장애인,소년소녀 가장,조손,모부자세대 | 보험료 | | 252 | 252 |
| 시군구 | 청주시 | 저소득층자녀 무료학습교 실 운영 | 학습 지원(공부 방 포함) | 저소득층기정중학생 | 영어, 수학 교육 | | 16 | 16 |
| 시군구 | 청주시 | 저소득층자녀 무료학습교 실 운영 | 학습 지원(공부 방 포함) | 기초수급자,한부모,저소득층중학교 1-3학년생 | 수학, 영어 교육 | | 26 | 26 |
| 시군구 | 청주시 | 조손가정 지원 | 수당 지원 | 조부모와손자녀만으로구성된세대 중18세미만의아동을포함한기초수 급자세대 | 월 3만원/세대 | | 18 | 18 |
| 시군구 | 청주시 | 조손가정수당 | 수당 지원 | 조부모와손자녀만으로구성된세대 중18세미만의아동을포함한기초수 급자세대 | 월 3만원/세대 | | 0 | 0 |
| 시군구 | 청주시 | 조손가정수당 | 수당 지원 | 조부모와손자녀만으로구성된세대 중18세미만의아동을포함한기초수 급자세대 | 월 3만원/세대 | | 3 | 3 |
| 시군구 | 청주시 | 지역노인일자리사업 | 노인 일자리 | 65세이상노인중기초노령연금수급 자중노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자 | 사업단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임금 지급 -지급금액:5,560/시간 -주5회/1일 2시 간/월 35시간참여 | | 970 | 970 |

| 사업유형 | 시군구 | 시업명 | 사업목적 세부분류 | 대상 | 내용 | 시도예산 (백만원) | <u>총</u> 예산 (백만원) | 백만원 <u>단위고정</u> |
|------|-----|--------------------------|-------------------|--------------------------------|--|---------------|----------------------|--------------------|
| 시군구 | 충주시 | 다문화가족지원 |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 관내다문화가족 | 한국어 자격취득 및 국적 취득 교육, 다 문화기족 이중 언어 웅변대회, 다문화가 족 한국어 능력향상 퀴즈 대회 | | 9 | 9 |
| 시군구 | 충주시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 리후생비 지원 | 보육교사 지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 월 10만원/ 인 | | 636 | 636 |
| 시군구 | 충주시 |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 |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 소년소녀기정, 결함가정, 가정위 탁가정 | 월 4만원/ 인 | | 4 | 4 |
| 시군구 | 충주시 | 청소년공부방운영 | 학습 지원(공부 방 포함) | 관내 청소년 | 학습 공간 제공(도서대출, 인터넷, 학습 정보제공), 학습지원, 특기정석교육, 문화 체험활동 | | 260 | 260 |
| 시군구 | 충주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 영(자체) | 아동청소년 보 호 서비스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및 정화, 청소년 선 도, 보호 등 | | 9 | 9 |
| 시군구 | 충주시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 직업능력-교육 | 만15세~24세청소년 |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중 성인기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학업지원','자립역량강화'서비스제공 | | 65 | 65 |
| 시군구 | 충주시 |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지원 | 만65세이상독거노인중기초생활수 급자및차상위계층노인 |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기구 안부전화 및 주기적 방문을 통한안전 확인 (월1회) | | 25 | 25 |

| 사업유형 | 시군구 | 사업명 | 사업목적 세부분류 | 대상 | 내용 | 시도예산 (백만원) | 총예산 (백만원) | 백만원 단위고정 |
|--------------|-----|--------------------------|-----------------------|---|---|---------------|--------------|-------------|
| 시도/시구구 매칭 |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가시돌봄요양 서 비스(비용) 지원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 요한 독거노인 | 주기적 안전확인(가정방문, 유선 등),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 | 179 | 597 | 597 |
| 시도/시구구 매칭 |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 일자리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참여 희망 노인 | 월 20만원 | 1,200 | 2,400 | 2,400 |
| 시도/시구구 매칭 |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 처방전에 의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 109 | 363 | 363 |
| 시도/시구구 매칭 | |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 당 지원 | 보육교사 지원 | 관내 어린이집 담임교사 중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 교사 | 월 2~4만원/ 인 | 715 | 2,383 | 2,383 |
| 시도/시구구 매칭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보육교사 지원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시간 연장, 방과후시설 보육교사(별도채 용시) | 월 6~8만원/인 | 7,663 | 19,158 | 19,158 |
| 시도/시구구 매칭 | | 수화통역센터 운영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 청각, 언어 등록 장애인 | 청각, 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 수화교육 및 보급사업, 청각·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 | 1,048 | 10,480 | 10,480 |
| 시도/시구구 매칭 |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저소득 가정,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 녀를 둔 여성장애인 |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 자 녀 양육 및 가사활동, 산전·산후 관리,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홍보사업 | 343 | 4,288 | 4,288 |
| 시도/시구구 매칭 | | 여성취업지원센터 지원 | 직업능력-교육 | 구입업체 및 경력단절여성(구직자) | 구인업체, 구직자 상담 및 연계, 이동 취 업상담실 운영, 취업한마당 행사 등 | 263 | 877 | 877 |
| 시도/시구구 매칭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 전원 인건비 지원 | 보육시설 이동 및 시설 지원 | 장애전문어린이집 | 월 100만원/ 인 | 120 | 240 | 240 |
| 시도/시구구 매칭 | | 장애인한부모기정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활동지원 이용자 중 한부모 장애 인 세대 |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시간 추가제공 : 월 60시간 | 55 | 183 | 183 |
| 시도/시구구 매칭 | |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관내 거주 2~3급 중증장애인 67명 |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시간 추가제공 : 월 40시간(1인) | 279 | 930 | 930 |
| 시도/시구구 매칭 | |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 교실 운영 | 학습 지원(공부 방 포함) | 관내초등학생-어려운가정의자녀우 선선정 | 부진한 학과지도, 예.체능 서클반 운영, 집단체험 활동 및 현장학습, 생활상담 및 정서지도, 중식 및 간식제공 | 266 | 665 | 665 |
| 시도/시구구 매칭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 터 운영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지원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 업 내용에 따라 1급 및 2급 중증장 애인을 우선대상 |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 립생활기술훈련 | 350 | 700 | 700 |

| 사업유형 | 시군구 | 사업명 | 사업목적 세부분류 | 대상 | 내용 | 시도예산 (백만원) | 총예산 (백만원) | 백만원 단위고정 |
|--------------|-----|-------------------------|-------------------|--|--|---------------|--------------|-------------|
| 시도/시구구 매칭 |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 우개선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 생활복 지사) | 월 10만원/ 인 | 507 | 1,268 | 1,268 |
| 시도/시군구 매칭 | | 최중증장애인 비우처서 비스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1등급자 중 독거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 비 120%이내인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시간 추가제공 : 월 10, 20, 80시간(대상에 따른 차등 시간 제공) | 656 | 2,187 | 2,187 |
| 시도/시구구 매칭 | | 충청북도수레비퀴 자립 상담실 설치운영 | 장애인 지역사 회재활 지원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 애인 복지증진 기여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민원대행, 상담지도, 휠체어 수리 | 30 | 100 | 100 |
| 시도/시규구 매칭 | | 학업중단(학교폭력)청소 년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보 호 서비스 | 만15세~24세 학업중단청소년, 학업중 단 숙려대상청소년, 보호복지 교정시 설 청소년 및 기타 취약 청소년 | 상담지원 및 학습유형 조사, 인터넷 강의 지원, 검정고시 학원비 교재비 지원 | 360 | 1,200 | 1,200 |
| 시도/시구구 매칭 |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에너지(난방) 지원 |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의130%이내저소 득한부모가족전세대 | 월 5만원/세대/11월~2월 | 958 | 3,992 | 3,992 |
| 시·도 | | 1366 여성긴급전화 운영 | 폭력-피해 예 방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하는 여성 | 여성폭력 피해자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 관 련기관 시설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 조의 지원 | | 51 | 51 |
| 시·도 | | 광역여성취업지원네트워 크활성화 | 직업능력-교육 | 관내 경력단절 여성(미취업 여성) 및 취업연계기관 종사자 | 취업설명회를 통한 구인구직 연계서비스, 취 업연계기관 종사자 네트워크 강화 | | 40 | 40 |
| 시·도 | | 수화교실운영 | 장애인 교육 지원 | 농아인, 건청인 | 국제수화 통역사 양성, 전문통역사 양성, 수 화통역사 보수교육을 위한 강시수당, 일반운 영비 지원 | | 17 | 17 |
| 시·도 |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 건강증진 지원 | 전 연령 | 정신질환자조기발견등록사례관리, | | 1,920 | 1,920 |
| 시·도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 영 | 건강증진 지원 | 일반인, 알코올, 도박, 인터넷 의존자 | 재활프로그램 운영(단주방법, 사회적응훈련), 알코올 환자 등 중독자 등록 및 상담, 중독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 141 | 141 |
| 시·도 |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 직업능력-교육 | 관내 구직여성 | 직업교육훈련,사회취미교육,취업지원 자살예방및정신질환편견해소,홍보,교육등 | | 227 | 227 |

15101 65,136 <u>65136</u>

[토론]

중앙정부 사회보장정비 방안에 대한 충북지역 복지계 대응 토론회

■ 발행일 : 2015년 10월 22일

■ 발행처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행동하는복지연합